■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1.>

특 허 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